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라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학협력단은 우리 대학교의 각종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기능을 한다.
(개정 2010. 6. 24.)

제3조(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개정 2010. 6. 24., 2017. 6. 12.)

1. 산학협력관련 부속기관의 행정지원과 조정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5. 대학의 시설과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
7.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단장, 부단장 및 센터장의 자격) ① 단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직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0. 6. 24., 2010. 10. 1., 2013. 8. 19., 2013. 12. 10.)

② 부단장 및 센터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직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07. 4. 11., 2010. 6. 24., 2010. 10. 1., 2012. 2. 1.)

③ 연구소장은 교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15. 8. 10.)

제5조(부서, 업무)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총괄실, 연구지원실, 기업지원센터를 두고, 기업지원센터에 기업지원실과 기술사업화실을 두며, 부설기관으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와 산학연구소를 둔다. 또한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기구를 둘 수 있으며,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 9. 1., 2010. 6. 24., 2012. 2. 1., 2013. 8. 19., 2013. 12. 10., 2015. 8. 10., 2016. 5. 2., 2016. 9. 5., 2017. 5. 15., 2017. 8. 7., 2018. 2. 5., 2019. 2. 1.)

② 특정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4. 9. 1., 2010. 6. 24., 2015. 8. 10., 2016. 9. 5.)

③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2. 2. 1., 2013. 8. 19.)

제6조(조직과 임면) ① 각 실과 센터 및 연구소에는 실장,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04. 9. 1., 2010. 6. 24., 2012. 2. 1., 2015. 8. 10.)

② 실장은 우리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 9. 1., 2012. 2. 1.)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 4. 11.)

- ④ 산학협력 전담교원과 제5조제2항의 사업기구의 장은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04. 9. 1., 2010. 6. 24., 2012. 2. 1., 2016. 9. 5.)

제7조(권한의 위임)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개정 2010. 6. 24.)

②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총괄실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0. 6. 24.)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6. 24., 2014. 4. 14.)

1. 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2. 예·결산 심의
3. 정관의 변경 및 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5. 12. 2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특별사업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제15조(회계처리기준)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정관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0. 6. 24., 2015. 8. 10.)

제16조(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기관 지정) ① 회계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 다만,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능력이 있는 부속연구기관 등을 분임회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관 제16조제3항의 수입담당자와 지출담당자는 단장이 임명하되 사업의 규모에 따라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제18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①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2.)

② (삭제 2017. 6. 12.)

제19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3.)

②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단 조직 기구표(개정 2017. 5. 15., 2017. 6. 12., 2017. 8. 7., 2018. 2. 5., 2019. 2. 1., 2019. 6. 3., 2020. 1. 1.)

